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6. . . (제 회)	

모범공무원 규정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윤호중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6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모범공무원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모범공무원 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○ 모범공무원 수당 인상(안 제8조의2)

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5만원”을 “7만원”으로 한다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기획예산처(구 기획재정부)와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 예정

3) 규제심사 등 예정

대통령령 제 호

모범공무원 규정 일부개정령안

모범공무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5만원”을 “7만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모범공무원 수당에 관한 적용례)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의2(모범공무원 수당) ① 모 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<u>5만원</u> 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되,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 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부터 3년간으로 한다. 다만,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 하지 아니한다. 1. ~ 3. (생 략) ② (생 략)	제8조의2(모범공무원 수당) ① -- ----- ----- <u>7만원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	
연 락 처	(02) 2100 - 4092